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 2023년 3월 21일 개정되고 동년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내용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친화

도시, 여성친화도시 등과 같이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자치구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자치법규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서울시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